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

- 2023년 사천읍행정복지센터 -
자체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사 천 시
공보감사담당관



- 2023년 사천읍행정복지센터 - 자체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 사천시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은 사천읍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3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I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2023. 11. 7.(화) ~ 11. 9.(목) <3일간>
- 감사반: 감사팀장 외 5명
- 감사범위: 2021년 1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 전반
- 감사중점
 - 각종 지시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사항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사항과 회계질서 확립
 - 주민등록, 인감, 세외수입 등 각종 민원처리 사항
 - 각종 사업의 추진 및 공사 시공의 적정성 등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1. 기본현황('23. 11월 기준)

(단위: 명)

통(리)반수		세대수	인구수			조직단체 현황					
통(리)	반		계	남	여	이장협의회	주민자치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연보호
39	212	9,033	17,732	9,434	8,298	39	29	26	28	30	33

2. 공무원현황('23. 11월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27	1	6	6	10	4
현원	26	1	7	8	4	6

Ⅲ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괄

(단위: 건, 명, 천 원)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계	주의	시정	개선	계	징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징수	세입
18	12	6	-	2	-	-	2	4,661	4,416	245	-

◆ 처분요구사항

1. 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근무지의 국내출장시 정액으로 지급하되,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하나,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한 출장자에게 일비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지 않았음.

⇒ 처분요구사항: 시정

과다 지급된 여비 “회수” 조치 요구

2. 회계관계공무원 직무대리자 미지정

- ▶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르며,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3조에 따라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받은 사람이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 회계관계 공무원(지출원)이 특별휴가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지급명령 승인처리로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3. 이륜자동차 취득세 부과 업무 소홀

-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그 산출한 세액에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 ▶ *건의 이륜자동차 취득세 부과 건에 대하여 과세표준액 비교 검토를 소홀히 하여 취득세를 적게 부과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시정

실무담당자 “주의” 조치 및 과소 부과된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시정” 조치 요구

4.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2항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는 감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 ▶ 재등록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2항에 따른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감경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시정

실무담당자 “주의” 조치 및 과소 부과된 주민등록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정” 조치 요구

5.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활동일지 검토 소홀

- ▶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장은 주민자치회 사무 수행에 있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과-1****호로 사무국장 활동일지 변경 서식을 첨부하면서 사무국장에게 활동일지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토대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 ▶ 담당공무원이 2023. *. 1*. ~ *. *.3. 연가 중임에 따라 사무국장 활동 내용이 확인이 불가함에도 사무국장 활동일지에 담당자 확인란에 날인하는 등 사무국장 활동일지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소홀

-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같은 기준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에 따라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 ▶ 안전관리비 부당 청구액 ***천 원을 확인하여 감액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시정

과다 지급된 공사비 “회수” 조치 요구

7. 건설공사 감독 및 검사, 정산 업무 소홀

- ▶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건설공사를 감독·검사시에는 계약서, 설계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규격 또는 시공방법에 따라 계약의 이행내용을 정확히 감독 및 검사하여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는 재시공, 감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 ▶ “○○○○ ○○로 ○○공사” 외 *건을 계약 체결하여 준공 처리하면서 공사 중 또는 준공검사 시 정산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함으로써 공사비 *,620천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사항: 시정

과다 지급된 공사비 “회수” 조치 요구

8. 공사의 계약 방법 부적정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등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에도, 같은 시기에 공사량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미계상

- ▶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하는 총공사 금액(도급액+관급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 ▶ “○○○○○○ 정비 공사” 외 *건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미계상하고 “○○○○○○ 정비공사” 외 **건 예정가격 작성 시 환경관리비를 미계상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10. 통합사례관리 종결대상자 사후관리 업무 소홀

-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종결대상자를 사후관리하면서 모니터 대상 가구별로 상담계획 수립 후, 계획에 따라 모니터 상담을 시행하고 상담 결과를 등록해야 하나 통합사례관리 종결대상자 **명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적정한 시기에 실시하지 않는 등 통합사례관리 종결 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11. 사망자 장애인등록증 반환 안내 및 회수 소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 중 사망자에 대하여 부당 사용이 없도록 사망한 장애인의 가족 등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안내하여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후 폐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장애인 사망자 **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안내를 소홀히 하여 장애인등록증을 미회수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12. 경로당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리 소홀

- ▶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관리 지침」에 따라 관광성 경비, 일반적 식대 등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 원칙에 보조금 집행 시 지출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소규모 물품 구입비나 간담회비(식비), 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를 억제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 ▶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정산을 함에 있어 영수증을 첨부하였으나 지출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사용품목을 알 수 없는 것이 있는 등 경로당 운영비 정산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13.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업무 소홀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증명서류를 갖추어 서식에 따라 교육훈련 면제 신청하여야 하며,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면제 대상자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읍·면·동장 내부결재(승인)을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게 되어 있음에도,
- ▶ 교육훈련 면제 처리를 하면서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류가 남아 있지 않아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14. 주민등록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 업무 소홀

- ▶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 신청서 상 신청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동의를 받아 입증자료를 조회해야 하며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입증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나,
-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없이 입증자료를 조회하여 발급하였으며 신청서에 수입증지를 누락였고,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증빙 없이 교부하는 등 전입세대열람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15.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업무 소홀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1명당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되, 자연훼손, 성명·생년월일·성별 변경, 주소변경란 부족, 영주귀국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는 면제하여야 하나,
- ▶ 수수료 무료 대상이 아님에도 무료로 발급하거나 무료 발급 대상임에도 수수료를 징수하였고, **건의 ‘보안기능 추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수료 면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를 선택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사항: 시정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징수·환급” 조치 요구

16. 인감 관련 업무 소홀

- ▶ 「인감증명법」 제12조 등에 따르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 인감증명서를 위임 발급하면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미기재하여 무인을 받지 않았고, 인감변경신고에 대하여 수수료 무료 처리 대상이 아님에도 무료 처리하는 등 인감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17.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업무 소홀

- ▶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의무기재사항인 영농거리 등이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검토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18. 산불감시원 관련 업무 소홀

- ▶ 「봄철 산불감시원(기동) 운영(채용) 계획」에 따라 2022년 가을철 및 2023년 봄철 산불감시원 채용 당시에는 이·통장 및 읍면동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